

압류자동차(건설기계) 인도명령서

채납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상호 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또는 거소			
인도해야할 재산의 표시				
인도기일		년 월 일 까지		
인도장소				
인도를 명하는 이유		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		

위 재산은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채납처분에 따라 압류됐으므로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45조제5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발 신 명 의 직인